

감리지적사례 FSS/2106-08 : 유형자산 허위계상

- 쟁점 분야: 유형자산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및 제1016호
- 결정일: 2020년
- 회계결산일: 2014.1.1.~2017.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종합유선방송업을 허가받아 유선방송 서비스가입자에게 방송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송망 설치·유지보수 공사를 주로 지역내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외주(도급)를 주어 진행하는 업체이다.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 B는 ‘14년 지역내 정보통신공사업자를 인수하여 사명을 C사로 변경 후, 차명 주주 및 차명 대표이사를 내세워 외형상 회사와 무관한 법인으로 가장하고 회사와 각종 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17년까지 C사는 회사의 용역업무 대부분을 수행하였다.

회사는 B의 지시하에 용역비를 특별한 이유없이 임의인상하는 등 C사에 공사용역비를 과도하게 지급하였으며 이를 선급금 및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하고 이후 유형자산(전송선로설비)으로 대체하였다. 회사는 이 과정에서 가공공사가 실제 실행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과거 실제 진행된 공사의 설계도면, 원가계산서, 노무비계산서, 현장 사진 등을 이용하여 가공공사의 준공서류 등에 첨부하는 등 허위증빙들을 작성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용역업체가 실제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공사비를 지급한 후 공사가 진행된 것처럼 가장하고 가공의 거래에 대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유형자산 및 감가상각비를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히 표현해야 한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문단6에 따르면 유형자산은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이며, 문단8에 따르면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등의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은 회사가 계상한 유형자산이 실제 공사가 수행되지도 않은 가공의 자산으로 유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 11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를 수행할 때,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은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에 의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는 것이며, 감사인은 이에 따라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회계감사기준 240(재무제표감사에서의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문단5에 따르면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얻을 책임이 있다.

③ 감사인은 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횡령 및 주가조작 등 금전 관련 범죄 전력이 있어 회사가 부정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14년~'16년 회사가 전송망 공사의 90% 이상을 C사에 외주를 주면서 공사단가까지 큰 폭으로 인상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공사비 지급액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는 등 부정에 관한 별도의 감사절차를 계획하고 수행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5. 시사점

회사의 최대주주, 대표이사 등이 범죄 전력 등으로 횡령 등에 따른 회계부정 및 오류가 의심될 경우 감사인은 회사의 진술이나 주장, 제시 증거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심도있는 분석적 검토 등을 통해 회계분식의 가능성이 높은 계정을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강화된 감사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재무제표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얻을 필요가 있다.